## 예 산 총 칙

## 2023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634,880,807	19,046,424
일반회계		606,762,840	18,202,885
특별회계		28,117,967	843,539
_	기타특별회계	28,117,967	843,539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197,095	35,913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893,514	26,805
	주차장특별회계	7,714,333	231,430
	수질개선특별회계	18,313,025	549,391

- 제 2조 세입 · 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 · 세출예산" 과 같다.
-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4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090,573천원으로 한다.
-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7,100,100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특별교부세, 특별조정교부금, 인센티브 재정보전금, 특정목적기부금, 외부기관 특정목적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(성립전집행)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